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 .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공설송조당 2관의 소재지를 「도로명주소법」에 맞게 명시하고 신설된 부부단실의 이용 기준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설송조당 2관 소재지 명시(안 별표 1)

- 구미시 옥성면 선상동로 419-1

나. 부부단실 이용 기준을 규정(안 별표 2, 별표 3)

- 안치 조건 : 부부 동시 안치
- 관내사용료 적용 :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관내인 경우

다. 구미시 장사시설 사용료 관내·관외 구분 정비(안 별표 3)

- 개장유골
 - 관내 기준 : 연고자 주민등록이 구미시 지역인 경우
 - 연고자 범위 : 부모, 배우자, 자녀
- 골분
 - 관내기준 : 골분이 안치된 봉안의 소재지가 구미시 지역인 경우
 - 관외기준 : 골분이 안치된 봉안의 소재지가 구미시 이외의 지역인 경우

- 외국인사망자
 - 관내기준 : 사망일 현재 사망자의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가 구미시 지역인 경우
 - 관외기준 : 사망일 현재 사망자의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가 구미시 이외의 지역인 경우

라. 별표 제목 변경(안 별표 3)

- 추모공원 ⇒ 장사시설

마. 연장계약(안 별표 3)

- 공설승조당 연장계약시 관내·관외 구분은 최초 안치시의 계약에 따른다.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도로명주소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구미시 조례 제 호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부단실 사용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 중 부부단실 사용에 관하여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부단실 사용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개장유골 신고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 중 개장유골 신고에 관하여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개장유골을 신고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개장유골의 관내·관외 구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장유골의 관내·관외 적용을 받은 자는 이 조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장사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제3조 관련)

구 분	명 칭	소 재 지
묘지	구미시 옥계공설묘지	구미시 옥계동 511번지(1,045㎡) 구미시 옥계동 512번지(1,861㎡) 구미시 옥계동 513번지(1,438㎡) 구미시 옥계동 산 5-1번지(14,082㎡) 구미시 옥계동 산 6-1번지(10,413㎡) 구미시 옥계동 산 108번지(3,091㎡)
	구미시 선산공설묘지	구미시 선산읍 봉곡리 산41번지(17,058㎡) 구미시 선산읍 봉곡리 산42번지(11,901㎡) 구미시 선산읍 봉곡리 산43번지(21,421㎡) 구미시 선산읍 봉곡리 산44번지(18,248㎡)
봉안시설	구미시 공설송조당	1관 : 구미시 옥성면 선상동로 419 2관 : 구미시 옥성면 선상동로 419-1
화장시설	구미시 추모공원	구미시 옥성면 추모공원로 81

[별표 2]

장사시설별 사용료 (제9조 관련)

1. 구미시공설묘지 (30년)

(단위: 원)

명 칭	사용료		관리비	
	기준	금액	기준	금액
구미시 옥계공설묘지	1제 곱 미터	24,000	기 당1년	2,000
구미시 선산공설묘지	1제 곱 미터	24,000	기 당1년	2,000

※ 구미시민이 아닌 사용자로부터는 소정금액의 배액을 가징한다.

2. 구미시공설충조당 (15년)

(단위: 원)

구분 실별	사 용 료		비 고
	관 내	관 외	
일 반 실	200,000	700,000	
부부단실	300,000	1,100,000	
무연고실	60,000	150,000	
외국인실	120,000	300,000	

※ 관내·관외 구분은 별표 3에 따른다.

※ 부부단실은 부부가 동시에 안치하여야 사용 가능함.

3. 구미시추모공원

(단위: 원)

구 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관내	관외	
화장 시설	일반 사체	15세 이상(1구)	100,000	600,000	
		15세 미만(1구)	80,000	350,000	
	죽은태아(1구)		40,000	170,000	
	개장유골(1구)		60,000	250,000	
유택동산	1구		10,000	10,000	

※ 죽은 태아는 사산증명서를 발급받은 태아를 말한다.

구미시 장사시설 사용료 관내·관외 구분 (제9조 관련)

구 분	관 내	관 외	비고
일반사체	사망일 현재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한 사람	사망일 현재 구미시 이외 지역에 주민 등록을 두고 사망한 사람	
죽은태아	사산일 현재 산모가 구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산일 현재 산모가 구미시 이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개장유골	개장신고일 현재 기존분묘 소재지가 구미시 지역이거나 분묘 연고자(부모, 배우자, 자녀)가 구미시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개장신고일 현재 기존 분묘 소재지가 구미시 이외 지역이면서 연고자(부모, 배우자, 자녀)가 구미시 이외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골분	골분이 안치된 봉안의 소재지가 구미시 지역인 경우	골분이 안치된 봉안의 소재지가 구미시 이외의 지역인 경우	
외국인 사망자	사망일 현재 사망자의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가 구미시 지역인 경우	사망일 현재 사망자의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가 구미시 이외의 지역인 경우	
무연고 사망자	사망자의 최초 발견 장소가 구미시 지역인 경우	사망자의 최초 발견 장소가 구미시 이외의 지역 인 경우	

※ 일반사체의 경우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태아 또는 영아는 그 모의 주민
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한다.

※ 부부단실 관내 적용은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관내이어야 한다.

※ 공설송조당 연장계약시 관내·관외 구분은 최초 안치시의 계약에 따른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 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 바. 생략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 차. 생략

3. ~ 6. 생략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도로명주소법」

제21조(도로명주소의 사용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법인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도로명주소를 표시하거나 사용

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명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 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부상의 등록기준지 표시 또는 주소 표시
2. 각종 인·허가 등 행정처분시 주소표시
3. 공공기관 주소의 위치표시
4. 공문서 발송시 주소표시
5. 위치안내표시판 제작과 위치표시 및 위치안내
6. 인터넷 홈페이지의 위치안내
7. 그 밖에 주소 및 위치표시와 관련된 사항

소관 실 · 과		사회복지과
입 안 자	과 장	안 진 희
	담 당	이 재 삼
	담 당 자	강 민 채 (480-5187)